

행정기획위원회

소 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안

(강수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강수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1일

발의자 : 강수진, 정병기, 정기혁, 박영섭,  
정윤주, 김육영, 이인순, 김경이,  
소형준, 경수현, 진선아, 고영옥,  
권영애, 정해숙, 임현주

## 1. 제안이유

일상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신체,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 및 범위,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지도·감독 및 환수,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포츠클럽법」,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클럽”이란 「스포츠클럽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,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있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지정스포츠클럽”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3. “공공체육시설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4조(보조금의 교부 등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5조(회계관리)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도·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

단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